의안번호	제 173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			
제출연월일	2023년 1월 4일			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173

제출연월일 : 2023년 1월 4일 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-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 등 소속 직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예우 및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고,
- 충청북도청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 장례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(안 제3조)
- 장례위원회의 구성 및 관장 사항 (안 제4조)
-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(안 제5조)
- 집행위원회 구성 및 관장 사항 (안 제6조)
- 장례비용 지원의 범위 (안 제7조)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・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붙 임

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 게 예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장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공무상 사망직원"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해(危害)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재직 중인 직원을 말한다.
 - 2. "충청북도청장"이란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"가족장"이란 공무상 사망직원의 장례를 충청북도청장(이하 "도청장" 이라 한다)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,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.
- 제3조(도청장의 대상자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 직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장례위원회가 심의·결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유가족이 도청장을 원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.
 - 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(충청북 도의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속 공무원. 다만, 「소방공무원법」에

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.

- 2. 「충청북도 공무직원 운영규정」에 따른 공무직원
- 3. 「충청북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」 또는 「충청북도의회 기간제근 로자 운영 규정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
- 제4조(장례위원회) ① 도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 북도 장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되, 장례가 마무 리되면 자동 해산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한다.
 -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 - 2. 도청장 대상자의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
 - 3. 그 밖에 장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다만 제2호의 사람은 공무상 사망직원이 사망 당시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 - 1. 행정부지사
 - 2.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직 위에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워 또는 공무직원
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 사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 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-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- 1. 도청장의 대상자 여부 결정
- 2. 장례의 방법・일시・장소에 관한 사항
- 3.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행정운영 과장으로 한다.
- 제5조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 ① 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 ·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.
 - 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6조(집행위원회) ① 도청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 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며,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.
- 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·의식·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- 제7조(장례비용) ① 도청장 또는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상 사망직원 1명당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,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.
 - 1. 노제 비용
 - 2. 삼우제 비용
 - 3. 사십구일재 비용
 - 4.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 - 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
 - 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
 -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
 - 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수행 사망,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같 이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한다.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 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애도기간 운영)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충청북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,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.
- 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-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, 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 - ② "경력직공무원"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)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반직공무원: 기술·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- 2. 특정직공무원: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, 교육감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- ③ 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정무직공무원
 - 가.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
 - 나.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 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- 2. 별정직공무원: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 -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 상한연령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□ 공무원 재해보상법

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무원"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. 다만,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.
 - 나.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
- 2. "공무수행사망자"란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(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를 말한다)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.
 - 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할 것
 - 나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관리·감독 권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
 -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적 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
 - 라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또는 그 밖의 법령(이하 "「산업재해보상 보험법」등"이라 한다)에 따른 재해보상 적용자일 것
- 3. "순직공무원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다.
 - 가.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
 - 나.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
 - 다. 퇴직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

□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제5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업무상의 재해"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.
- 2. "근로자"·"임금"·"평균임금"·"통상임금"이란 각각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"근로자"·"임금"·"평균임금"·"통상임금"을 말한다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"임금" 또는 "평균임금"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"임금" 또는 "평균임금"으로 한다.
- 3. "유족"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(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자녀·부모·손자녀·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.
- 4. "치유"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.
- 5. "장해"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.
- 6. "중증요양상태"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 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 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.
- 7. "진폐"(塵肺)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(纖維增殖性)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.
- 8. "출퇴근"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.
- 제6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이하 "사업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위험률·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제37조(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)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 다만,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相當因果關係)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업무상 사고
 - 가.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 생한 사고
 - 나.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 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
 - 라.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
 - 마.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 생한 사고
 - 바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2. 업무상 질병

- 가.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(因子), 화학물질, 분진, 병원체,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
- 나.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다. 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라.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- 3. 출퇴근 재해
 - 가.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 - 나.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
- ② 근로자의 고의·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

만, 그 부상·질병·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.

-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.
-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민법

제779조(가족의 범위)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.

- 1.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- 2.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-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□ 국가장법

- 제4조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(殯所)를 설치·운영하며 운구(運柩)와 영결식(永訣式) 및 안장식(安葬式)을 주관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(焚香所)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 -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5조(장례비용)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 고에서 부담한다. 다만,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

은 제외한다.

제6조(조기 게양)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(弔旗)를 게양한다.

□ 국가장법 시행령

- 제6조(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)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조문객(弔問客)의 식사 비용
 - 2. 노제(路祭) 비용
 - 3. 삼우제(三虞祭) 비용
 - 4. 사십구일재(四十九日齋) 비용
 - 5.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 - 6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장(自然葬)을 위한 비용
 - 7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봉안시설(奉安施設)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
 -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

□ 대한민국국기법

- 제9조(국기의 게양방법 등) ①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한다.
 - 1. 경축일 또는 평일 :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
 - 2. 현충일·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: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 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(弔旗)를 게양함
 - ② 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,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, 국기의 게양위치, 게양식·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

제3조(국기의 게양일) ① 「대한민국국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이 정한

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
- 2. 충북도민 체육대회 기간
- 3. 경술국치일(8월 29일 조기게양)
- 4.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

□ 충청북도 공무직원 운영규정

제4조(직종의 구분) ① 공무직원의 직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- 1. 행정보조원: 서류정리·문서입력 등 사무업무, 컴퓨터 SW 및 HW 문제해결 업무, 도서관·자료실 도서 및 문서자료 관리업무, 통계 기록 정리 업무, 이공계·인문사회계 분야의 각종 연구업무 및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인력
- 2. 현업실무원: 시설물·장비 관리, 농림수산 관련 현장작업, 공사작업 등 현업 업무, 방문고객 응대 및 매표 업무, 상담전화·민원사항 접수 등 서비스 제공 업무, 주차시설 관리 및 안내 업무, 식재료 준비 등 음식 조리에 종사하는 인력 또는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인력
- 3. 조경관리원: 청사, 연구소 또는 관광시설 등의 수목 등 조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
- 4. 시설미화원: 사무실 등 건물 내외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
- 5. 도로보수원: 도로시설의 유지·보수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인력
- 6. 청원경찰: 「청원경찰법」의 적용을 받는 인력
- 7. 청원산림보호직원: 「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이력
-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원의 직종을 임의로 변경하여 종사하게 할수 없으며,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속 직원에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, 명예롭고 경건 한 장례의식을 집행하기 위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O 충청북도청장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·결정을 위한 장의위원 회 등의 개최와 장의(葬儀) 집행에 필요한 비용 보조 등 소요 경 비

3. 관련조문

- O 안 제5조(장례위원회)
- O 안 제6조(장례범위 및 장례기간)
- O 안 제13조(장례비용)

4. 비용 추계결과

○ 재정수반 요인 : 도청장 1회 당 **장례비용 45,000천원** 정도 예상

O 추계의 전제 : 연중 1회

O 추계결과 :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5,000천원

O 재원조달방안 : 도비(예비비) ※ 비정기적 발생

5. 연도별 비용 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충청북도청장 장의비용	22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	45,000

[비용추계서]

(1회당 소요비용/원)

구 분	규 격	수 량	비 용(원)	비고
합 계			45,000,000	
위원회 개최	소 계		2,500,000	
장례위원회	15명	1회	1,500,000	주요사항 심의결정
집행위원회	10명	1회	1,000,000	장례위원회 위임사항 심의
장의비용	소 계		42,500,000	
부 고	신문공고 3단,15cm이하	지방지	2,000,000	영결식 참석대상자 등
재단 장식비	3m * 1.2m 2단 장식	1식	2,000,000	
빈소 사용료	빈소	5일	4,000,000	빈소 및 접객실 사용료
안치 및 염습		1식	2,000,000	안치 5일, 염습료
수의 및 관		1식	2,000,000	
빈소 운영		1식	4,000,000	도우미, 상복, 제수비용 등
영결식장 단설치	면적 6m×3m 높이3.5m이내	1식	14,000,000	임시 구조물가설, 현판 포함 (조문객 식사비용 대체 가능)
영구차 ·리무진	-	각 1대	1,000,000	1일간
조 화	대형	2개	400,000	도지사 명의
조 문 용 품 - 헌화 꽃바구니 - 헌화용 꽃 - 흉 화 - 근조 리본 - 장 갑 - 영구차 리본 다과, 차재료	생화 국화 흑색 백색 대형 '	2개 300송이 60개 300개 100족 2조 실수요량	1,600,000 400,000 500,000 200,000 100,000 200,000 500,000	장의위원장, 유족대표 장의위원, 유족, 조객 장의위원, 유족 조객, 종사원 등 장의위원, 유족, 종사원 등 영구차, 리무진 장의위원, 조객, 종사원 등
안내문 인쇄	영결식 안내	500매	500,000	영결식 참석 조객 등
방송시설	-	1식	1,500,000	영결식장
기타 장의 준비	영결식 기자재	1식	3,000,000	장의용품 등
화장장 사용료		1식	1,000,000	
안장식		1식	3,000,000	안장식 행사 운영

^{*} 장의지원 항목은 장례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

^{** &#}x27;20년 **순직소방관 장의비용 : 40,000천원**(장례식 10,000, 영결식 27,000, 안장식 3,000)